

산업통상부공고 제2026-277호

「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‘행정절차법’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4월 14일

산업통상부장관

「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「대한민국과 에콰도르공화국 간의 전략적경제협력협정」이 정식 서명(‘25.9.2.)됨에 따라 협정 대상국가인 에콰도르공화국을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세이프가드조치 관련 조문에 추가

2. 주요내용

- ① ‘에콰도르공화국’을 ‘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세이프가드조치 (긴급수입제한조치) 및 잠정세이프가드조치 대상 국가에 추가 (협정문 제7.1조 및 제7.3조제1항 → 시행령제24조제1항에 반영)
- FTA 체결에 따른 관세 인하 또는 철폐로 수입이 급증하여 상대국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규정

- ② ‘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세이프가드조치 완화* 대상 국가’에
에콰도르공화국을 추가(협정문 제7.2조7항→시행령제24조16항에 반영)

* 조치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, 경감 조치 의무화 국가 대상에 반영

- ③ ‘세이프가드조치의 재량적 적용 배제가 가능한 대상 국가’에 에콰
도르공화국을 추가(협정문 제7.5조제1항→시행령제24조의2제1항)

* 다자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에 대해 상대국으로부터 수입한 물품으로 인한
피해가 크지 않은 경우, 상대국을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

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
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)를 통하여
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
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
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일반우편 : (30118)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
산업통상부 무역구제정책과
- 전자우편 : rooky06@korea.kr
- 팩스 : 044-203-4816

4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부 무역구제정책과(전화(044)
203 - 5854, 팩스 (044)203-4816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1**불공정무역조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**

대통령령 제 호

**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
일부개정령안**

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4조제1항에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4. 에콰도르공화국

제24조제16항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7. 에콰도르공화국

제24조의2제1항 중 “미합중국·인도공화국·페루공화국·콜롬비아공화국·호주·캐나다·뉴질랜드·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·이스라엘·인도네시아공화국 및 필리핀공화국”을 “미합중국·인도공화국·페루공화국·콜롬비아공화국·호주·캐나다·뉴질랜드·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·이스라엘·인도네시아공화국·필리핀공화국 및 에콰도르공화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「대한민국과 에콰도르공화국 간의 전략적경제협력협정」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4조(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세이프가드조치) ① 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(이하 “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”라 한다)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(이하 “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”라 한다)의 대상 국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.	제24조(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세이프가드조치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23. (생 략)	1. ~ 23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<u>24. 에콰도르공화국</u>
② ~ ⑮ (생 략)	② ~ ⑮ (현행과 같음)
⑯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국가에 대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일정 기간을 주기로 그 조치를 점차 완화해야 한다.	⑯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16. (생 략)	1. ~ 16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<u>17. 에콰도르공화국</u>
제24조의2(세이프가드조치 적용 배제) ① 법 제22조의4제2항에 따른 세이프가드조치 적용배제	제24조의2(세이프가드조치 적용 배제) ① ----- -----

의 대상국가는 <u>미합중국 · 인도공화국 · 페루공화국 · 콜롬비아공화국 · 호주 · 캐나다 · 뉴질랜드 ·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· 이스라엘 · 인도네시아공화국</u> 및 <u>필리핀공화국</u>(이하 이 조에서 “세이프가드조치 적용배제대상국가”라 한다)으로 한다. ② · ③ (생략)	----- <u>미합중국 · 인도공화국 · 페루공화국 · 콜롬비아공화국 · 호주 · 캐나다 · 뉴질랜드 ·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· 이스라엘 · 인도네시아공화국 · 필리핀공화국</u> 및 <u>에콰도르공화국</u>----- -----. 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--	--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산업통상부 무역구제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3 - 5854